

국제톤수 []증서 []확인서 발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측정요청일자 + 7일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)		
어선내역	어선번호	어선의 명칭	
	선 적 항	진수연월일	년 월 일
	총 톤 수	국제총톤수	톤
측정(재측정)을 받으려 하는 일자		년 월 일	
측정(재측정)을 받으려 하는 장소			

「어선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

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
대 한 민 국 영 사

첨부서류	1. 일반배치도 2. 선체선도 3. 중앙횡단면도 4.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. 상부구조도 6. 삭제 <2014.12.31.> 7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○ 벌칙규정

-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서 국제통수증서를 선내에 갖추지 않고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국제통수증서를 반납(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)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

○ 그 밖의 유의사항

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국제통수증서를 발급받아 배안에 갖추어야 합니다.
-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은 국제통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